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8.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95. 7. 3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95. 7. 18

다. 상정일자: 제35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5. 8. 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국장 박충희)

가. 제안이유

'95. 6. 10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조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급대상 명기(안 제2조 제1항)

-특별공적 인정

-국장급 지급 배제

○포상금 지급기준 하향(안 제3조)

-1년차 체납징수분의 3/100을 1/100로 축소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안제도 채택시 3만원을 10만원~30만원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6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재무국장(소관국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안 제8조)

-즉시 환수 조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영훈)

'95. 6. 10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조례와 균형을 이루고 포상금지급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1) 제2조(지급대상)를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2) 제3조(지급기준) 중 포상금 지급기준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축소 조정하고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는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였으며,

3) 제3조의 2(지급한도)를 신설하여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지급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하였고,

4) 제4조(제안의 심사)를 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행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되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5) 제8조(환수)를 신설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행정착오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환부이자율 가산하여 즉시 환수조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에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

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	---

제출년월일: '95. 7. 3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95. 6. 10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조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급대상 명기(안 제2조 1항)

- 특별 공적 인정
- 국장급 지급 배제

나. 포상금 지급 기준 하향(안 제3조)

- 1년차 체납징수 분의 3/100을 1/100로 축소
-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 제안 제도 채택시 3만원을 10만원~30만원

다. 국별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6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재무국장(소관국장)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안 제8조 신설)

- 즉시 환수 조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다. 기 타: 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

합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금을 채납한 자에 대하여 채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년도에 채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제1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로 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지급한도)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미수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각국별로 영등포구○○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3.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중 "과년도 채납액징수실적대장"을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으로 하고,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 제1항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다만, 성업 공사에 공매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미수액 징수에 직접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함은 서울특별시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일제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 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u>100분의 3</u> 2. (생략) 3.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 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채택된 경우에는 1건당 3만원 5. (생략) (신설) 제4조(제안의 심사) 제3조 제4호의 제안의 심사는 구의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행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1. <u>100분의 1</u> 2. (현행과 같음) 3.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현행과 같음) 제3조의 2(지급한도)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미수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각 국별로 영등포구○○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파장급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3.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과 징수부서는 별지 1호 서식의 <u>과년도 채납액 징수실적 대장</u>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u>숨은 세원발굴과정 실적대장</u>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신청) 제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포상금 지급신청 사유 발생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 ①구청장은 제3조 각호의 사실을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대장비치) <u>과년도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u> <u>숨은 세원발굴과정대장(포상금지급대상)</u>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 제1항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